

방치선박 제거 공고

우리 군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선박으로 인해 수질오염 및 지역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므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**2023년 12월 4일까지** 부안군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11월 20일

부 안 군



1. 공고기간 : 2023. 11. 20.(월) ~ 2023. 12. 4.(월) / 15일간
2. 제거대상 선박 : 1척 (붙임내역 참조)
3. 처리예정 일시 : 2023. 12. 4.(월) 이후 (공고기간 종료 이후)
4. 소유자(점유자)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
 - 가.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.
 - 나. 아울러 공유수면 내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64조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- 다. 해당 선박의 이해관계인(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)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5. 문 의 처 : 부안군 해양수산과 해양환경팀(☎063-580-4076)

방치선박 제거공고

발견장소	부안군 위도면 치도리 234-7번지 인근 공유수면			
선박 제원	선명(명칭)	미상	선박(어선)번호	미상
	선적항	미상	톤수	4톤미만(추정)
	주요치수	-		
관리청	부안군	관리번호	제2023-02호	
제거예정일자	2023년 12월 4일 이후 (공고 종료 이후)			
제거방법	해체 및 폐기처리 (직권 제거)			
공매장소 및 일시	해당 없음			
입찰보증금	해당 없음			

방치선박
전경사진



위 선박은 방치 선박으로써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**2023년 12월 4일(월)**까지 부안군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,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문의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0일

부안군



담당 : 부안군 해양수산과 해양환경팀 (063-580-4076)

